

# 음식물류폐기물 수집·운반·처리 민간위탁 동의안

|          |   |
|----------|---|
| 의안<br>번호 | 4 |
|----------|---|

제안연월일 : 2026. 6. .  
제안자 : 평창군수

## 1. 제안이유

-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, 제7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수집·운반·처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평창군의회 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위탁사무명

- 음식물류폐기물 수집·운반·처리 민간위탁

### 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- 민간위탁 추진근거
  -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4조 제2항(생활폐기물의 처리 등)
  - 「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」 제6조 제1항(생활폐기물 처리)
  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 제3항(사무의 위임 등)
  -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 제4조(사무대상)
  -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 제7조(의회의 동의)

### 다. 위탁사무 내용 등 위탁 범위

-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·운반 및 처리
  - 우리군에서 발생(사업장폐기물 제외)하는 생활폐기물 약 4,200톤의 수집·운반 및 처리

## 라.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현황

- 우리군은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현황없음
  - 이에, 폐기물처리업 등을 득한 도내 업체 선정
- 음식물류폐기물 수집·운반 업체 현황(4개소)
  - (주)정진, (합)평창용역, 대관령산업(주), 평창환경주식회사
- ※ 과거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운영 현황
- 평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공공처리시설(용평면 재산리)
  - 2002년 준공, 2014년 01월 시설 폐쇄
- 평창군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(진부면 하진부리)
  - 2014년 준공, 2018년 10월 시설 철거(소음·악취·폐수처리등 민원발생)

## 마. 민간위탁기간

- 1년 기간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업체 선정
  -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가정, 식당등에서 음식물 수거 후 계약되는 처리업체까지 운송

## 바. 수탁자 선정방식(제8조 준용, 공개모집 의무)

- 매년 용역 경쟁입찰을 통한 업체 선정 후 수행

## 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소요 예산 : 1,765,865천원('26년 기준)
  -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: 4,200톤 x 151,325원 = 635,565천원
  -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비 : 94,191,667원/월 x 12월 = 1,130,300천원
- ※ 산출근거 :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산정용역(2024.9.)

## 아.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(제4조의2)

- 관내 공공처리시설 전무에 따른 자체 처리 불가능, 시설 신축시 막대한 재정 부담 및 주민 수용성(민원) 확보의 한계로 단기간 내 공공 주도 처리 구조 구축 불가
- 자체처리시설이 없는 현 상황에서 주민불편 최소화와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의 기술력과 인프라를 활용하는 민간위탁방식이 가장 타당하고 적정함

#### 자.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(재위탁 또는 재협약 시)

- 해당사항 없음

#### 차.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☐ 폐기물관리법

제14조(생활폐기물의 처리 등) ②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### ☐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

제6조(생활폐기물 처리)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(이하 "폐기물처리업자"라 한다)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·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## □ 지방자치법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## □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

제4조(대상사무) ①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
2. 공익성을 위하여 능률성도 함께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

② 제1항의 대상사무는 군의 조사·검사·검정 등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업무로 구분한다.

1. 노인, 장애인, 여성, 아동, 청소년, 노숙인 등 복지시설
2. 환경기초시설
3. 문화·관광·체육시설
4. 공원·녹지시설
5. 보건·건강증진시설
6. 산업지원, 직업훈련, 교통 등 관련 시설
7. 공무원 후생복지시설
8. 그 밖에 1년 이상 위탁기간인 단순 행정관리 시설물

제7조(의회의 동의)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

자하는 경우에는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군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수립하여 그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